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대구지방검찰청
전문공보관 정효삼
전화 053-740-4352

보도자료
2021. 5. 3.(월)

제 목

A 공사 직원 부동산투기 사건 수사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- 대구지방검찰청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(부장검사 고희곤)은 A 공사 차장 700(52세, 3급)의 부패방지법위반 등 사건을 '21. 4. 15. 경상북도경찰청' 으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하였는바,
 - 700은 영천시로부터 위탁받은 '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' 업무를 수행 하던 중,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토지(2억 5,000만 원) 취득(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), 위 사업 예산으로 자신의 토지 앞으로 도로 확장 공사 등을 하게 하여 6,400만 원 상당 이익을 취득(업무상 배임)한 혐의가 인정되어, 5. 3. 구속 기소하였음
- 본건 토지는 이미 몰수보전 조치가 되어, 유죄 확정 후 공매하여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고, 도로 공사비도 환수되도록 조치하였음

1

공소사실 요지

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
'17. 10.경 영천시로부터 설계변경을 승인받은 개발정보를 알고 '17. 11.~12.경 개발지역 부근 ㉠ 토지(2억 5,000만 원)를 매입하여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함
※ 아래 도로개설로 인해 피고인 소유 ㉠, ㉡ 전체 토지가 약 3억 원 시세 상승

● 업무상배임

'17. 1.~3.경 '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' 담당자로서 업무 수행 중 사업부지 내에 있는 ㉠ 토지를 매수한 후 마치 주민들의 요청인 것처럼 설계변경을 건의 하고 영천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'18. 5.경 자신의 ㉡, ㉠ 토지로 이어지는 도로의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하여 공사비 6,400만 원의 이익을 얻음

※ 위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상향식 사업임

2 수사 경과

● '21. 4. 5. 검경 간담회 개최

- 경상북도경찰청, 대구경찰청과 상시 연락 체계 구축

● '21. 4. 8. 구속영장 발부(4. 14. 몰수보전 인용)

- 수사팀 검사가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증거관계 및 구속 필요성에 관하여 의견을 피력하고 의견서를 제출함

● '21. 4. 15. ~ 5. 2. 송치 후 당청 보완수사, 5. 3. 구속 기소

- 추가 계좌 분석, 보완수사 등을 통해 명확히 사실관계를 특정하고, 부패방지법에 관한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범행 규명

3 수사 의의

● 검찰은 경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, A 공사 직원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충실한 조사 및 법리검토 등을 통해 구속 기소하였음

● 본건 토지는 몰수보전 조치가 되었고, 유죄 확정 후 공매하여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며, 지역정비 사업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하여는 영천시에 통보하여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☐